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창조투자자문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3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기관경고, 과태료 1,300백만원, 과징금 230백만원
임 원	문책경고 1명,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문책경고 상당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 제공 거래 또는 채무의 인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(주)창조투자자문은 대주주(甲)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사 등으로부터 2022.6.3. 총 16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사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사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,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(채권최고액 10억원)하는 등 총 16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.

< 관련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 제2항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8조 제1항 제1호, 제5호
3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3-72조 제1항 제1호, 제3호

(2) 적합성 원칙 위반

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,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,

(주)창조투자자문은 2018.1.1.~2023.6.26.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179건, 투자자문계약 88건 등 총 267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.

< 관련규정 >

1. 舊「자본시장법」(2020.3.24.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 제2항
2. 舊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(2021.3.23.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2조
3.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7조 제2항
4.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 제11조 제2항

(3)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·유지 의무 위반

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,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는데도,

(주)창조투자자문은 2018.1.1.~2023.6.26.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 계약 143건, 투자자문계약 71건 등 총 214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·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.

< 관련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60조 제1항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2조 제1항 제1호
3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3조 제1항
4.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28조 제1항